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11. 14 선고 2016가단3575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17.10.17.

판결선고 2017.11.14.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별지 도면 표시 1,2,3,4,5,6,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판넬 창고 41㎡ 를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나.30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0.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2017.10.1.부터 위 '가'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970원의 비유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차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8년경부터 정읍시 c 대 18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0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장에 판넬 창고 41㎡ 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가'부분 토지에 대한 2007.1.1.부터 2017.9.30.까지의 임대료는 합계 306,810원이고, 2017.10.1. 부터의 임대료는 월 2,9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및 소유물의 반환으로 위 '가' 부분 지상 판넬 창고를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부당이득금의 지급으로 위 306,810원 및 2017.10.1.부터 위 '가'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9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대하여 피고는 2002년경 원고의 양계장신축 공사에 관하여 동무를 주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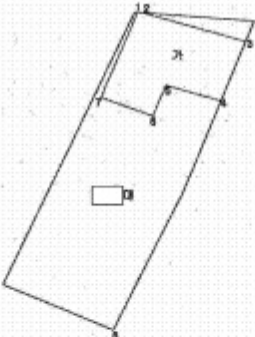
판 사 김

감 청 도

토 지 소 재	정읍시 	축척 1200분의 1
---------	--	-------------



참 고 도



범 례			
지적선			
건물외곽선			

토 지				
지 번	부호	면적(㎡)	내 용	비 고
	가	41	1,2,3,4,5,6,7,8	판별참고
비 고 ※ 본 감청도는 축척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